

개정 農藥管理法 해설

그 배경과 방향

안
병
규
농수산부
식물방역과

지난 5월호에서는 개정 농약관리법의 주요내용을 해설한 바있으며 이를 대별하면 농약의 수급과 가격, 품목고시와 등록, 검사 등으로 구분할수 있겠다.

이번호에서는 농약관리법의 개정배경과 80년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농약행정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업계, 농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한다.

市販중심의 需給조절

금년 들어 자유경쟁 체제의 기본법이라 할수 있는 공정거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한 자유경쟁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와같은 경제전반의 흐름에 호응하여 농약도 앞으로는

관주도의 농협농약 확보·공급을 지양하고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시판위주로 공급체제를 전환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약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약의 종류과다, 외래어 상표사용, 약효저하농약 유통, 농협농약 강매 원성 등 제반문제점을 극소화시켜나갈 방침이다.

다만 시판으로의 전환에 있어 수급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시판상의 가격횡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돌발 병충해에 대비하여 농약을 어떻게 비축하여 원활히 공급할수 있는가 하는 두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됨으로써 시판에 의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수제, 관민협조개발

우수농약의 개발과 제조를 위하여 개정농약 관리법에서는 종전의 개별 허가에서 품목고시제로 바꾸고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도 농촌진흥청 주관하에 실시토록 개정하였다. 이는 일면으로 보면 모든 체제가 자유경쟁에 의한 민간주도형태로 흐르는데 반해 농약의 시험분야는 관주도로 흐르는 감이 있으나 이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농민들에게 좀더 약효 높은 우수농약을 적극 개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농약제조업체의 시설이 강화되고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되는등 업계의 기본 요건이 갖추어지고, 농약관리규정이 어느정도 비축·조성되면 기금관리자인 농약공업협회에 시험전담부설기관을 설치토록하여 농촌진흥청의 농약전담연구소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우수농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민협조 체제를 강화토록 할 방침으로 있다.

품목명으로 혼란방지

농약의 품목고시제 도입에 따라 농약의 포장지 표기와 광고등에 품목명(또는 품목기호)과 상표가 동시에 표기되도록 되어있는바, 이에 따라 농민들은 당분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바는 아니나 농약을 허

가제에서 등록제로 하고 자유경쟁에 의하여 품질향상과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우수농약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약 수급 기능이 시판으로 유도됨에 따라 이와같은 불편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 또한 품목명 사용에 따른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줄이고자 앞으로 고시되는 신규품목은 상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표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가능한한 품목명으로 통·폐합함으로써 혼란의 소지를 배제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물론 앞으로 농민의 지적수준이 높아져 상표와 품목명을 동시에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와같은 제약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며 그 시기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바이다.

원부제사입기준규제

농약의 검사에 있어서는 종전의 출하전 국가보증검사에서 제조업자의 자체검사 체제로 전환하고 직권검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은 총론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개정농약관리법에서는 원제뿐만 아니라 부제의 사용도 철저히 규제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제조처방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원부제의 사용을 규제한 이유는 지난 79년 감사원 감사결과 불합리한 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앞으로 제조업자가 제조한 농약은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신념과 각오로 양질의 농약을 공급하고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험시설을 완비하며, 부단히 연구, 개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때에는 제조업자 스스로 시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약검사결과와 행정벌과 형사벌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제정될 농약검사업무처리요령에서 규정하고자 한다.

무절제한 사용을 방지

농약 사용량의 증가와 사회개발정책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보전은 이제 선진국만이 논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도 이를 피부로 절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금번에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사용기준에 있어서는 종래 19개 품목에서 53

개 품목으로 대상품목수를 늘이고 농약포장지에 작물별 사용시기, 방법 사용회수를 전문게재하고 선전시에도 안전사용기준을 필히 포함토록 하였으며 사용자인 농민에게도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농민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안심하고 생산된 농작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을 보호토록 하고자 하였으며 취급제한기준도 강화하여 고독성농약은 수도에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다.

이상 농약관리법 개정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였는데,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80년대 농약행정발전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제도보다는 이의 운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제조업자, 판매업자, 생산자인 농민 모두가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솔선하여 실천할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다 저진 우호협력
뻗어가는 우리의 힘